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82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 예외 요건 강화 등(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 예외 요건 강화 등(안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 예외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하고,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 ③ (생략)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u>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u>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u>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⑦ (생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u>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u>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 <u>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의</u> ----- ----- -----

현행	개정안
<신설>	-----. ⑨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워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이를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현행법 제12조의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²⁾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략)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략)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4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③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제5항),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되,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심의 결과 반영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8항).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과정에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와 기획재정부 조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 9. (생략)

⑥·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기획재정부 조정 현황 >

(단위: 개, 억원, %)

연 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6월 말)		기획재정부 조정 (6~8월)						정부안 (9월)	
			증액		감액		증감 (D-B-C)	비중 (D/A)		
	개수	금액 (A)	개수	금액 (B)	개수	금액 (C)			개수	금액
2022	1,183	231,757	245	11,441	24	△261	11,180	4.8	1,198	242,937
2023	1,254	246,601	106	3,740	107	△1,754	1,986	0.8	1,259	248,587
2024	1,158	214,759	86	1,269	20	△292	△1,693	△0.8	1,161	213,066
2025	1,184	244,753	179	4,765	18	△768	3,997	1.6	1,202	248,7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은 예산 편성 시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한정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배분·조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안정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재정 투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 재

정수지, 총수입 등 재정여건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에 대한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경우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적시의 탄력적인 대응이 제한되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분야별·부문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특정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분야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된 예산안 편성 권한³⁾과 관련하여 예산 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권한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재정당국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현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는 현행

3)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한편, 2025년 3월 5일 기준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다음 2건의 개정안을 통하여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200012	황정아의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무화 등
2201272	이해민의원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등

셋째, 개정안은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지출 규모’의 범위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확정예산 기준 2023~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개발 예산 (A)	전체 예산 (B)	비율 (A/B)	연구개발 예산 (A)	전체 예산 (B)	비율 (A/B)	연구개발 예산 (A)	전체 예산 (B)	비율 (A/B)
예산	26.8	441.1	<u>6.1</u>	24.6	438.3	<u>5.6</u>	27.5	447.4	<u>6.1</u>
기금	2.4	197.7	1.2	1.9	218.4	0.9	2.1	225.9	0.9
합계	29.3	638.7	<u>4.6</u>	26.5	656.6	<u>4.0</u>	29.6	673.3	<u>4.4</u>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 의 처

02)6788-5227